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1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위성곤 · 조계원 · 이학영
윤준병 · 김기표 · 최혁진
정진욱 · 이개호 · 허영
이건태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톱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톱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톱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톱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톱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 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가족”을 “가족, 친밀한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을 “물건등을”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상대방을”을 “상대방등을”로 한다.

아. 상대방등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하는 행위
제3조제1호 중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상대방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反)하여 6개월 이내에 스톱킹행위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를 “상대방등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하여지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조사

제5조제3항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상대방등의 의사에 반

(反)하여”로, “승인할 수 있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가목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를 “피해자등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를 “피해자등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를 “피해자등으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피해자등과”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를 “피해자등이”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을 “사법경찰관, 피해자등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 <u>직접</u> <u>또는 제3자를 통하여</u> ----- ----- -----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u>가족</u> (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가. ----- ----- <u>가족, 친밀한 관계인</u> -----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상대방등에게 <u>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u>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라. ----- <u>물건등을</u> ----- ----- -----
마. ~ 사. (생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스토킹범죄”란 <u>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u> 3. (생 략)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u>상대방을</u>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u>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 경고</u> 2. ~ 4. (생 략)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	<u>아. 상대방등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하는 행위</u> 2. -----<u>상대방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反)하여 6개월 이내에 스톱킹행위를</u>----- -----. 3. (현행과 같음) 4. ----- -----<u>상대방등을</u>-----.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 ----- -----. 1. ----- ----- -----<u>상대방등의 의사에 반(反)하여 스톱킹행위를</u>-----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2. (생략)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5. (생략)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상대방등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하여지거나-----

1. 2. (현행과 같음)

3.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대한 조사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2. (현행과 같음)

③ -----상대방등의 의사에 반(反)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5. (현행과 같음)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략)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생략)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피해자등으
로-----

나. -----

-----피
해자등의-----

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 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u>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u> 하는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 ----- ----- -----<u>피해자등으 로</u>----- -----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u>피해자</u> 또는 그 법정대리인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사법경찰관, 피해 자</u>----- -----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 략)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u>피해자</u>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 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사법경 찰관, 피해자</u>----- ----- -----.
⑥·⑦ (생 략)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② (생 략) ③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u>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u>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u>피해자</u>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u>: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3. (생 략)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피해자등과</u>----- ----- -----<u>피해자등이</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사법경찰관, 피해자등</u>----- ----- -----. 1. -----<u>사법경찰관, 피해자등 및 그 법정대리인</u>----- ----- -----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